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매 장 유 산 보 호 및 조 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42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

-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업무정지/별표4) 경고, 1년, 2년 → 6개월, 1년6개월, 등록취소
 - (발굴허가 제한/별표2) 관련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6개월, 1년6개월, 2년)
 -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록제한/별표5) 2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Ⅱ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등록 취소된 조사기관,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등록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가.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다. 조사기관이 3차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9호	6개월 1년6개월 2년
--	-----------------------	----------------------------

별표 4 Ⅱ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9호	• 1차 위반: 6개월 • 2차 위반: 1년6개월 • 3차 위반: 등록취소
---	------------------	---

별표 5 II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 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2년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8조제1항제4호”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연 락 처	(042) 481 - 3135